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4가단51198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458,231원과 그 중 9,374,043원에 대하여는 2024. 1. 15.부터, 30,612,448원에 대하여는 2024. 2. 28.부터 각 2024. 4. 17.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3. 8.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3. 8. 24. 접수 제60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박재민

별지